

# 무인자율운항선박 운항에 따른 국제해양법적 Gap 분석

이용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 Gap Analysis on operation of Unmanned Autonomous Ship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Lee Yong Hee\*\*

\* Maritime Law Departmen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핵심용어** : 무인자율운항선박, 국제해양법, 연안국, 관할권, 법집행

**Key Words** : *Unmanned Autonomous Ship,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oastal State, Jurisdiction, Law enforcement*

### 1. 서론

복수의 유럽콘소시엄이 2025년 이후 국제항행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상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IMO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 노력을 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국제항행에 이용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현존 국제해양법의 적용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제항행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상선의 운용에 따라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법적 또는 규정적 Gap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유엔해양법협약상 무인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따른 쟁점

먼저,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무인자율운항선박이 기존 IMO 해사관련 협약상 언급하고 있는 선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제9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기국의 선박에 대한 의무중 하나로 모든 등록선박이 자격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아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선장과 사관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기국의 의무 위반이 된다. 즉, 동 선박의 건조후 운항상 허용성측면에 대한 법적 gap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국, 연안국, 항만국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내지 통제권의 행사상

여러 가지 난점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인자율운항선박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그에 일치하게 입법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에 대하여 여하히 정선, 검색, 나포 등 법령의 집행을 행사할 것이며, 누구에게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집행가능성을 여하히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규칙상 gap이 존재한다.

### 3. 법적 또는 규칙상 Gap의 보완방향

무인자율운항선박의 운항 허용성측면의 법적 gap은 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합의, IMO 관련협약의 개정의 방식으로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약 또는 국내법 위반선박에 대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 선박의 타국 관할해역 진입전 사전정보 제출 의무의 부과, 선박 설계시 승선 또는 검색시 요구되는 시설 및 장치의 설비 의무화, 신속한 범죄인 인도절차의 합의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평가

무인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국제해양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IMO의 입법 논의단계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토의를 통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First Author: yhlee@kmou.ac.kr, 051-410-4395